

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[별표 3]

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(제9조제4항 관련)

1.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

구분	세부 규격
가. 선체	빗물이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
나. 길이	5미터 이상
다. 전폭	2미터 이상
라. 최대출력	100마력 이상
마. 최대속도	30노트 이상
바. 탑승인원	4인승 이상
사. 기관	제한 없음
아. 그 밖의 장비	나침반(지름 10cm 이상) 1개, 속도계(MPH) 1개, 회전속도계(RPM GAUGE) 1개, 예비용 노, 소화기 및 자동 정지줄

2.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세일링요트

구분	세부 규격
가. 길이	약 10미터 이상
나. 전폭	제한 없음
다. 최대출력	15마력 이상
라. 최대속도	제한 없음
마. 탑승인원	6인승 이상
바. 기관	제한 없음